

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18. 11. .
발 의 자	이선우 의원 외 5명

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선우 의원 대표 발의)

의 안	
번 호	

발의연월일 : 2018. 11. .

발 의 자 이선우 · 송용자 · 김재우
홍난이 · 신문식 · 이지연 의원
(6명)

1. 제안이유

구미시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의원들의 의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,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개정

- 현행 : 「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」
- 개정 : 「구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

나. 교섭단체 구성(안 제2조)

다. 교섭단체 기능(안 제2조의2)

라. 교섭단체 지원(안 제2조의3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

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”를 “구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”를 “구미시의회의 교섭단체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를 제2조의4로 하고, 제2조,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교섭단체 구성) ① 구미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다만,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정당의 소속의원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구미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의원명부 대신 소속의원의 연서·날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소속의원에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

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.

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항에 따라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조의2(교섭단체 기능)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과 정당정책의 추진
2.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수렴 및 조정
3.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
4.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
5.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2조의3(교섭단체 지원) 의장은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중 “「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」”를 “「구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②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본문 중 “「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」”를 “「구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「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「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</u>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구미시의회(이하"의회"라 한다)</u>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u><신 설></u>	<u>구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</u> 제1조(목적) ----- <u>구미시의회의 교섭단체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. 제2조(교섭단체 구성) ① <u>구미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다만,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</u> ② <u>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정당의 소속의원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구미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섭단</u>

<신 설>

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의원명부 대신 소속의원의 연서·날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소속의원에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.

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항에 따라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조의2(교섭단체 기능)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과 정당정책의 추진
2.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수렴 및 조정

<신 설>

제2조 (생 략)

3.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협
의 및 조정

4.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

5.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
요한 사항

제2조의3(교섭단체 지원) 의장은
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
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
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
지원할 수 있다.

제2조의4 (현행 제2조와 같음)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